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50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(안 안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).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안 제8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안건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	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	< 신 설 >	1. 안건이 경미한 경우
	< 신 설 >	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	< 신 설 >	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< 신 설 >	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(위원 중 일부는 대면,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할 수 있다.	(개정안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1. 안건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(위원 중 일부는 대면,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1. 안건이 경미한 경우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< 신 설 >	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(위원 중 일부는 대면,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 략)	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